

보도시점 2025. 5. 28.(수) 12:00 배포 2025. 5. 28.(수) 07:30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공부 중... 개인정보위 지원 강화

- 가명정보 제공 실적 올해 공공기관 평가 반영으로 가명정보 활용 새 국면
- 개인정보위, 상담인력 증원, 컨설팅 및 가명처리 인프라 지원 강화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월), 5월 21일(수)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되었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 *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각각 100점 만점 기준 최대 5점씩 반영 (가명정보 제공건수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건수 건당 1점)
- ※ 설명회 영상은 5월 30일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속도감있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① 우선,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6월부터 ①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运붙임1: 담당자 연락처), ②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이하, '플랫폼')(dataprivacy.go.kr)에 '자주묻는질문'(FAQ)을 이번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중심으로 확대 게시할 예정이다.(运붙임2: 10問 10答) ③ 온라인 문의에는 5일 이내 답변하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 2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① 각 기관의 가명정보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을 제공¹⁾하는 한편, ②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의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²⁾를 우선 지원한다.(6.2일~) 또한, ③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명정보 전문가풀³⁾」에 속한 전문가를 지원한다.(단, 가명정보 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정)
 - 1)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내부운영체계에 관한 규정(가칭)」총리훈령 제정 추진
 - 2) 현재 공모가 진행 중(~6월 30일), 과제로 선정될 경우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하 '진흥원'), 관련 데이터 보유기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사례 창출 지원
 - 3) 현재 4개 분야(공공, 보건의료, 통신, 금융) 208명 활동 중(개인정보위가 위촉하며, 전문가 명단 및 주요 정보는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 ③ 가명처리 등을 위한 인프라·네트워킹 지원도 확충한다.
- 전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가명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보안구역 사용 등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명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온라인 가명처리 동시 이용자(현재 50명 가능) 급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진흥원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②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가명정보 수요자와 제공자를 진흥원이 연계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적으로 공 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목록 검색도 가능하다.(6.2일~)
- ③ 그리고, 가명정보 수요 발굴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데이터 명세를 플랫폼을 통해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6.2일~)
 - * 서울 5실, 강원 4실, 부산 4실, 인천 3실, 대전 3실, 대구 3실, 전북 2실 이용 가능 (☞붙임1: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위는 지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월 30일 (금, 150명 신청 접수 완료) 서울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며, 6월 중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서 설명회·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일정·장소 등 구체적 사항은 플랫폼 "공지사항"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가명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진흥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제도·인프라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개인정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축적·관리해 왔음에도, 그동안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민간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임을 언급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와 관행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개인정보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전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현황 및 담당자 연락처

붙임 2.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관련 10問 10答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근 (02-2100-3071)
		담당자	사무관	주문호 (02-2100-3088)
	한국인터넷진흥원 AI프라이버시팀	책임자	단 장	나은아 (061-820-2900)
		담당자	팀 장	김정주 (061-820-2910)







붙임 1 전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현황 및 담당자 연락처

연번	지역		위치(운영주체)	담당자 연락처	상담 인력 수
1	수도권	서울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 벤처타워 서관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02-431-4835 02-405-6481 02-733-1180 help@dataprivacy.or.kr	5명
2		인천	인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지원센터동 B1003호 (인천테크노파크)	032-714-9863 mw@itp.or.kr	3명
3	강원권	원주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 H타워 지식산업센터 2층 (강원테크노파크)	033-746-8765 wslee@gwtp.or.kr	6명
4	- 영남권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CENTAP 5층 (부산테크노파크)	051-744-8496 eunae@btp.or.kr	4명
5		대구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 DNEX 2층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053-215-4957 byeongjin@dip.or.kr	3명
6	충청권	대전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 대학교 정보화본부교육관 2층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2-826-4071 data_privacy@dicia.or.kr	4명
7	호남권	전북 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노파크)	063-226-9078 jelee@jbtp.or.kr	5명

붙임 2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관련 10問 10答

※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에서 제기된 질문 중 일부 주요한 사항을 발췌했으며, 더 많은 질의·답변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FAQ에서 확인 가능

< 타 법과의 관계 >

- Q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해도 '공공데이터법」상 문제가 없는지?
- A.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제공 가능함** (행정안전부 협의 완료)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법」제17조제1항은 '공공데이터 제공의무 적용범위'를 규율하는 조항일 뿐이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않음

「공공데이터법」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이하 생략)
- Q2. 개별 개인정보 관계 법률에서 제3자 제공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가명처리 시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 A. 개별법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당 특례 적용 가능
- ※ 그동안「의료법」,「전자상거래법」등 개별법상 정보주체 동의없는 목적 외 이용 제한 규정에「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 제1항을 일관되게 적용

< 가명처리 관련 >

- Q3. 가명처리를 외부 기관·기업 등에 위탁해도 되는지?
- A.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처리 외부 위탁을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위탁 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함
- Q4.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는 반드시 외부전문가에게 받아야하는지? 적정성 검토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지?
- A.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는 내부 인력으로도 가능하며, 검토와 관련 하여 **별도의 인적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참고로,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 제2항 준수 여부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판단을 하기 위함임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위가 선발한 분야별 가명정보 전문가풀(208명) 참고 가능

< 가명정보 제공 관련 >

Q5. 가명정보 제공 시 수수료를 받아도 되는지?

- A. 가명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취득을 제한하지 않음
- 각 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함
- ※「가명처리 수수료 산정 가이드라인」('25.2.20일 발표된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방안」 후속조치)을 현재 검토 중(연내 마련 예정)

Q6. 가명정보를 불특정다수에 공개해도 되는지?

- A.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불특정다수에 공개할 수 없음
-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 목적 및 처리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한된 조건 하에 제공됨
- Q7. 가명정보가 제공된 후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가명정보 제공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 A.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가명정보를 유출하거나 고의로 개인을 식별하는 경우, 해당 행위자만 제재
- 참고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후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생성된 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 가명정보 결합 관련 >

- Q8. 가명정보 결합 시 어떤 결합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 A.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함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결합전문기관에 관한 세부정보 확인 및 결합신청 가능

< 실적 증빙 · 인정 관련 >

- Q9.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가명정보 제공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만 실적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 A. 신청 채널을 제한하지 않음
-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Q10.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 제공 실적 인정 기준은?
- A.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정보가 신청인에게 제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가능
- 참고로, 공공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건은 해당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